

『2024 G-유니콘 육성프로그램』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지역 우수기술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『2024 G-유니콘 육성프로그램』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, 열정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3월

(재)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

1 모집개요

○ 사업목적

- 지역 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 발굴육성
- 우수기술창업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

○ 공고기간 : 2024. 03. 07.(목) ~ 2024. 03. 22.(금) 16:00까지

※ 선정기업 협약기간 : 협약일 ~ 25.2

○ 모집대상 :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지역 내 기술창업기업

- 공고일 기준, 업력 관계없이 5년 이내 투자유치 실적이 누적 5억원 이상인 지역기업
- 공고일 기준, 지역 내 본사, 지사, 지점, 연구소 기업 등을 두고 있는 기업

○ 선정규모 : 총 5개사 내외

○ 접수방법 :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후, 이메일 접수

※ <https://ccei.creativekorea.or.kr/gwangju/>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

※ 이메일 및 문의 : gjccei@naver.com /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TIPS운영팀 / 062-364-9184~5

○ 주요내용 : 기업별 최대 3억원(상금 1천만원) 이내 사업화자금 및 육성프로그램 지원

- 직접 지원 : 사업화자금(글로벌 시장진출비용 포함)
- 육성 프로그램 : 글로벌 진출(실증(PoC), 현지워크숍), 투자유치 IR, 오픈이노베이션 등

2 신청자격 및 분야

○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 업력 관계없이 5년 이내 투자유치 실적*이 누적 5억원 이상인 지역 소재** 기업

* 투자실적 인정범위는 [참고1]내에서 계약,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으로 한함

** 지역 내 본사, 지사, 지점, 연구소 기업 등을 두고 있는 기업

※ 신청 제외 대상

- 중앙부서 및 지자체 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수혜기업 제외(K유니콘프로젝트, D-유니콘육성프로그램 등)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/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1~3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-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○ 모집분야 : 기술기반 창업업종

※ 기술기반 창업업종(OECD, EU기준)

- 제조업, 지식기반 서비스업(정보통신, 전문·과학기술, 사업지원 서비스, 교육서비스, 창작·예술·여가서비스, 보건·사회복지 등

※ 제외업종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

-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,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

3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	지원내용
직접지원	사업화자금	기업당 최대 3억원(상금 1천만원) 지원(차등지급) 홍보비, 외주용역비, 지급수수료, 기계장치비, 재료비,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, R&D 기술고도화, 인건비, 글로벌 시장진출
육성프로그램	G-유니콘 전담지원	선정기업의 대·내외 홍보 전담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
	글로벌 진출 프로그램	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실증(PoC) 지원
	투자유치 프로그램	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IR데이 개최 등 투자자 및업 등 지원
	오픈이노베이션	대기업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확장 지원

※ 육성프로그램의 경우, 상기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선정기업에 사전 고지함

4 평가방법

○ 평가절차 :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- 서류평가 + 현장점검 + (1,2차)발표평가 + 최종발표평가 및 선정 토너먼트 5단계 선발방식으로 진행(발표평가 대상기업에 한해 현장점검 진행)

○ 평가단계 및 평가내용

평가단계		평가개요
요건검토		•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, 투자유치금액 등 요건검토
서류평가		• 일시·장소 : '24. 03. 28. (목),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평가장 • 선정규모 : 10개사 내외 • 평가방법 :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10개사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* 서류평가 동점 시 평가항목 순에 따른 고득점자 우선 선발,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* 발표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발표평가 제외
현장점검		• 점검기간 : '24. 04. 01. (월) ~ 04. 05. (금), 대상기업 사업장 • 점검위원 : 광주광역시 관계자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실무자 • 점검대상 : 발표평가 대상 기업(10개사) • 점검방법 : 제출한 서류에 따라 광주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력, 사업장, 사업활동 확인 *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며,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됨.
1차	발표 평가	• 일시·장소 : '24. 04. 12.(금),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• 선정규모 : 7개사 내외 • 평가방법 :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을 통한 발표평가
2차		• 일시·장소 : '24. 04. 25.(목),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• 선정규모 : 5개사 내외 • 평가방법 :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을 통한 발표평가
최종		• 일시·장소 : '24. 05. 10.(금),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• 선정규모 : 5개사(최종순위 결정) • 평가방법 :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을 통한 발표평가
• 참고사항		
1) 평가 일정 및 장소,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	
2) 대표자 발표 원칙, 동점 발생 시 성장가능성, 시장확장성, 사업계획 적정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		
3) 평가 전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, G-유니콘 선정기업 홍보 예정(선정자 한함)		
4) 고득점순, 사업화자금(최대3억, 상금 1천만원) 차등 지급		

○ 요건검토

- (신청요건)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(누락여부 등) 검토
 - ① 투자실적, ② 채무불이행 여부, ③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, ④ 정부, 지자체지원 사업 참여제한 여부, ⑤ 휴폐업 여부, ⑥광주 소재 기업 여부
- (투자유치실적)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투자계약 및 투자금 납입 완료된 누적 금액 5억원 이상 증빙자료 확인

○ 서류평가

- (내 용) 사업계획서 기반 기술·사업성·시장성 등 평가
- (선정규모) 10개사 내외
- (평가방법) 요건이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1차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
- (평가기준안)

평가항목(배점)	세부 평가기준
기술성(30)	· 사업아이템 핵심기술 개발실적,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등
사업성(30)	· 목표 시장분석 및 사업화 전략,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
시장성(30)	· 핵심기술의 제품 경쟁력, 시장성장성 및 차별화 전략 등
내부역량(10)	· 대표자 역량, 참여인력 역량 등

○ 1차 발표평가

- (내 용) 분야별 전문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
- (선정규모) 7개사 내외
- (평가방법) 요건이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1차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
- (평가기준안)

구분	세부 평가기준
1차 발표평가	· 유니콘 성장 가능성 및 시장 확장성
※ 토너먼트형 선발방식으로 인한 세부 평가기준 추후 안내 예정(단계별 선정기업에 한함)	

○ 2차 발표평가

- (내 용) 분야별 전문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
- (선정규모) 5개사 내외
- (평가방법) 요건이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1차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2차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
- (평가기준안)

구분	세부 평가기준
2차 발표평가	· 투자유치 및 가능성, 성장계획
※ 토너먼트형 선발방식으로 인한 세부 평가기준 추후 안내 예정(단계별 선정기업에 한함)	

○ 최종 발표평가

- (내 용) 분야별 전문평가단 및 시민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
- (선정규모) 5개사(최종순위 결정)
- (평가방법) 요건이 충족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2차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
- (평가기준안)

구분	세부 평가기준
최종평가	· 지역사회 공헌 가능성 및 글로벌시장 확장성
※ 토너먼트형 선발방식으로 인한 세부 평가기준 추후 안내 예정(단계별 선정기업에 한함)	

4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03. 07.(목) ~ 2024. 03. 22.(금) 16:00까지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gjccei@naver.com)
 -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(공지사항 및 팝업창 참고)
 - 제출 서류 일체를 전자파일(한글, PDF)로 합본하여 첨부파일로 제출
 - 이메일 제목명은 **G-유니콘 육성프로그램_신청기업명**으로 제출
 - 이메일 접수 외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, **16시 이후 접수 불인정**
 - 제출 서류 및 증빙 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
- 접수문의 :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TIPS운영팀 **062-364-9184~5**(사업담당자)
 - 문의가능시간 : 평일(월~금) 9시~18시 / 점심시간 제외(12시~13시)

○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	비고
1	신청기업 현황조사표 (※엑셀자료 이메일 제출)	첨부양식 (엑셀)
2	2024년 G-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사업계획서	별지 제1호 서식
3	개인정보 수집, 조회 및 활용 동의서	별지 제2호 서식
4	투자유치 내역확인서	별지 제3호 서식
5	주주명부	별지 제4호 서식
6	중복지원 금지약서	별지 제5호 서식
7	투자계약서 *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(사본) 일체 *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	
	투자자구분	제출서류
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	사업자등록증
	투자조합	고유번호증
	개인(엔젤투자자)	투자확인서(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)
	창업기획자	창업기획자 등록증
	외국투자회사	Certification of Registration
8	사업자등록증	사본가능 (원본대조필 날인)
9	법인등기부등본	공고일 이후 발급본 (원본)
10	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	
11	최근 3개년(2021년, 2022년, 2023년) 재무제표	
12	납세증명서(국세·지방세) (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)	
기타사항	※ 상기 신청관련 원본서류 일체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 ※ 사업신청 후, 추가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※ 벤처기업, 중소기업 등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제출해야 함 ※ 발표평가 대상자는 PPT자료 별도 제출(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) ※ 최종 선정기업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에 필요한 별도 서류 제출 필수 ※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,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	

6 추진일정

신청서 접수	▶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메일 접수	'24.03.07.(목) ~ 03.22.(금)
↓		
서류평가	▶ 자격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	'24.03.28.(목)
↓		
현장점검	▶ 발표평가 대상기업 사업장 현장점검	'24.04.01.(월) ~ 04.05.(금)
↓		
1차 발표평가	▶ 전문가 대면 발표평가를 통한 7개사 선발	'24.04.12.(금)
↓		
2차 발표평가	▶ 전문가 대면 발표평가를 통한 5개사 선발	'24.04.25.(목)
↓		
최종 발표평가	▶ 전문가 대면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순위 선정	'24.05.10.(금)
↓		
선정공고 및 협약체결	▶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↔ 선정기업	'24.05.13.(월) 이후
↓		
사업화관리 · 지원	▶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→ 선정기업	협약일 ~ '25.02.28.(금)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경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

7 선정자의 의무

-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와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협약체결 및 육성프로그램(G-유니콘 전담지원, 글로벌진출 프로그램, 투자유치 프로그램, 오픈이노베이션) 참가 및 점검, 성과평가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 - ※ 협약기간 내 휴·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(사업비 회수) 등 제재조치 가능하며, 협약시 이행보증보험 제출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조회에 동의해야 하며,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8 유의사항

-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하거나 창업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,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선정 이후 기간 포함)
- 제출된 사업계획 등 내용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
- 선정 이후 중복수혜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지원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참고 2

투자실적 인정범위

○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

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

- ①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**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**
- 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**벤처투자조합**
- ③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**신기술사업금융업자**
- ④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**신기술사업투자조합**
- ⑤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른 **한국벤처투자**
-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**
- ⑦ 투자실적, 경력, 자격요건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**
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자

- ① **신기술창업전문회사**
- 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**개인투자조합**
- ③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**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**
- ④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**한국산업은행**
- ⑤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**중소기업은행**
- ⑥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**은행**
- ⑦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**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**
- ⑧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의10에 따라 **온라인소액투자중개**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**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**
- ⑨ 「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**농식품투자조합**
- ⑩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**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**
- ⑪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**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**
- ⑫ **기술보증기금**
- 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**신용보증기금**
- ⑭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**외국 투자회사**

3.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**외국투자회사***

- * 외국투자회사 : 1)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
- 2)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
- 3)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

4. **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**

5.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**투자자산운용사, 증권사**

※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